
2015년도 제2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안내

2015. 5. 21.



목 차

I. 개요

1. 정책기획	2
2. 사업기획	3
3. 향후일정	4

II. 공모내용

1. 정책기획	6
2. 사업기획	19
3. 기타	31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34
2. 신청방법	36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선정	39
2. 평가절차	40
3. 연구사업관리	41

【별첨 1】 2015년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4
---------------------------------------	----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54
----------------------------------	----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55
--------------------------------	----

I. 개요

1 정책기획

□ 정의

- 보건의료 R&D의 거시적인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policy)을 기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유형 >

□ 목적

- 보건의료 R&D의 전반적인 동향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및 미래기술에 측조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 R&D의 중장기 전략적 투자방향 및 정책 방향 도출
 - 주요 동향 및 포트폴리오 분석, 미래사회 수요 및 이슈(issue) 도출
 - 기술예측조사,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방향 도출
-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전에 선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활용 방안

- 보건의료분야 미래 핵심기술별 향후 전략방향을 도출하여 기존 정책 방향 검증 및 신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2 사업기획

□ 정의

- 특정 R&D 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program)을 기획

□ 목적

- 보건의료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에 앞서 사전기획 연구를 통해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 국내·외 R&D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중점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 실행단위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세부추진방안 수립
-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전에 선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활용 방안

- 기획결과로 도출된 R&D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규 및 계속 추진 여부를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신규사업 지원에 활용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예산 확보 시 근거자료로 활용 등

3 향후일정

- 2015. 5. 21. 기획과제 공고
- 2015. 6. 22.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완료
- 2015. 6. 29. ~ 7. 3.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2015. 7. 15.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 공모내용

1 정책기획

①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가능한 보건의료 R&D 사업기획(공모)

□ 기획목적

-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자 기본 전략 마련
- 국민의료비 및 건강 보험 지출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분야 도출
- 건강보험 재정 투자와 정부 R&D 예산의 투자 영역을 구별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재정 투자 보건의료 R&D 연구 해외 동향 조사
-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보건의료 R&D 분야 도출
- 건강보험 재정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 산정
-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가능한 보건의료 R&D 사업 기획		유형	정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R&D는 국가 총 R&D의 7.1%(13년 기준), 이중 복지부 비중은 31%로 투자효과대비 과소 투자되어, Quantum Jump를 위한 투자확대 필요 ○ 고령화·만성질환자 등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13년 건보진료비 50조 돌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행전략 필요 ○ 임상적 근거부족에 따른 고가약제·의료행위의 비효율성 개선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의 R&D 투자 확대 필요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자 기본 전략 마련 ○ 국민의료비 및 건강 보험 지출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분야 도출 ○ 건강보험 재정 투자와 정부 R&D 예산의 투자 영역을 구별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재정 투자 보건의료 R&D 연구 해외 동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건강보험 R&D 투자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조사 - 투자 여건, 규모 및 분야 등 투자 현황 조사 - 정부 및 민간의 투자 영역과 건강보험 투자 영역 간 차별화 전략 조사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여 등 성과 조사 ○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필요한 보건의료 R&D 분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건의료 R&D 사업 분야 중 건강보험 재정 투자 필요 분야 발굴 -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신규 보건의료 R&D 분야 도출 - 산·학·연·병원 등 폭넓은 전문가, 학회·협회 등 의견 수렴 및 설문 조사 - 연구과제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사업계획, 추진체계, 소요예산 제시 - 연구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 건강보험 재정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장·단기 투자 규모 산출 - 건강보험 재정 투자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국민건강 증진 기여가능성 등 효과 분석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 및 관리 계획 도출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제시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②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경제 R&D 추진전략수립
기획연구(공모)

□ 기획목적

- 의료비 절감,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건강경제 R&D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수요 전망
- 건강경제 R&D 방향 설정 및 중점추진영역 도출
- 건강경제 R&D 구체적 추진전략 수립
- 건강경제 R&D 실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 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경제 R&D 추진전략수립 기획연구			유형	정책기획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 필요성</p>	<p>○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의료비용 증가와 新성장동력 산업의 부재 등으로 건강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p> <p>○ 기술혁신이 건강향상과 경제부흥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인 '건강경제(Health economy)'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전략적 차원의 R&D 추진 방안 마련 필요</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건강경제*(Health Economy)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 발전이 다시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지식·바이오통계발전의 원동력으로 설정했던 '지식경제'('90년대), '바이오경제'(2000년대)와 같이 '건강'이라는 요소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는 개념 * '국민건강경제 2030 비전과 추진전략'(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경제자문회의, '14.5)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 참고1. '건강경제의 개념'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목적 및 목표</p>	<p>○ 의료비 절감,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p>	<p>○ 건강경제 R&D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수요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경제 R&D 정의 및 범위 설정 -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 동향 분석 - 국내 제도적·사회적 환경 조사·분석을 통한 R&D 수요 전망 <p>○ 건강경제 R&D 방향 설정 및 중점추진영역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경제 R&D의 기본방향* 설정 및 비전, 목표, 핵심전략 도출 * 예) 적정의료기술을 통한 의료비절감, 예방·건강관리 중심 R&D추진, R&D 실용화 촉진, 첨단 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 - 건강경제 R&D의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 및 세부사업 도출 <p>○ 건강경제 R&D 구체적 추진전략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의 목표 및 전략, 주요 과제 도출 - 세부사업의 규모, 기간, 체계 및 추진방식 등 구체화 - 관련 법·제도·인프라·리스크 등 개선 목표 및 방안 수립 - 기존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 * 과학기술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3-'17), 보건산업 Blue-print 등 - 건강경제 R&D 실현을 위한 전략로드맵 수립 <p>○ 건강경제 R&D 실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절감, 산업진흥, 국민건강증진 등 기대효과 분석 - 건강경제 R&D 기획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기간</p>	6개월	<p style="text-align: center;">소요비용</p>	50백만원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방식</p>	공모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참고1] 건강경제의 개념

1 건강기반 경제 시대의 도래 (Opportunity)

□ 건강산업의 영역 확대

- 고령화·소득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건강산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 급속한 고령화(사회적), 소득수준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경제적), 이상기후 등 생활환경의 악화(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래 건강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
- 기존 보건산업(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영역이 항노화(Anti-aging), 웰니스(Wellness) 등을 포함하는 건강 전반 영역으로 확대
 - * 항노화, 웰니스 등 건강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

□ 타 산업의 건강분야로의 진출

- 세계적 IT 기업인 삼성전자, Google, Apple 등을 필두로 IT산업 부문에서 건강산업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 * Galaxy Gear Fit(삼성전자), Apple Watch(Apple), G Watch(LG전자) 등 실시간 건강상태 측정·관리가 가능한 웨어러블기기 시장이 급속 확대
- 또한 자동차, 건설(주거시설) 등의 산업에서도 건강의 가치가 점차 중요시되면서 건강산업과의 접목이 활성화
 - * 메디컬 시트(현대자동차), 아파트 기반 u-health 서비스(유라클, 포스코건설) 등 건강산업과 거리가 멀었던 산업에서 헬스케어 관련 제품·서비스 융합 확대 추세

□ 국민경제에서 건강산업의 비중 증가

- 보건산업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타 부문 대비 빠른 성장 중
 - '10~'12년 사이 총산출액과 부가가치가 각각 연간 7.26%, 6.73% 성장하여 타 산업* 및 GDP 성장률(4.7%)을 상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2012)
 - * 동 기간 총산출액 성장률은 전산업 6.73%, 서비스업 5.66%이고,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산업 4.54%, 서비스업 4.73% 수준

- 기존 보건산업의 성장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의 융합을 통한 건강산업 영역이 급속히 확대
 - * 전세계 기준 IOT-헬스케어 부문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20년 2,850억 달러 (Gartner, '13)에 달한 전망이며, '13~'22년 사이 환자관리 부문에서만 총 1,060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Asso, '14)
 - 특히 헬스케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시장을 주도
 - * 미국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규모는 '13년 9억 4,900만 달러에서 올해 12억 5,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웨어러블 피트니스 제품의 시장규모는 '13년 8억 5,400만 달러에서 '14년 11억 5,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CEA,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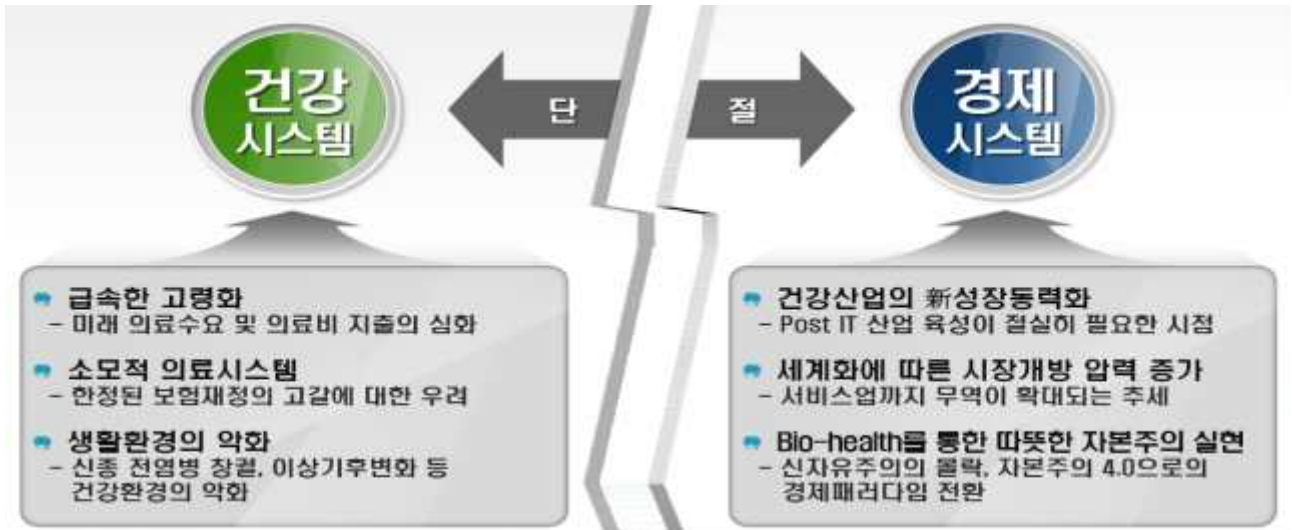
2 현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기 (Threat)

□ 건강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의료비용 증가 등 건강시스템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에 대한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
 -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 신종 전염병 창궐 및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비 지출 급증 전망이 건강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

- 중공업·IT 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新성장동력 산업이 부재한 상황
 - 기존의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산업 등은 현재 신흥국의 기술 추격과 낮은 비용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 위협
 - 또한 Post IT 산업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新성장동력이 부재



□ 건강과 경제의 대립 문제

- 국가경제의 활력 저하와 더불어 한정된 재원을 두고 증가하는 건강시스템의 유지비용이 상호 대립하는 상황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강시스템의 지출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

3 건강경제의 개념

□ 건강경제 개념 제기 배경

- 건강과 경제시스템이 한정된 크기의 파이 내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공진화를 위한 상생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 건강경제 패러다임과 미래형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건강산업 발전을 위한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파이의 크기를 키워 위기를 극복하고,
- 기술혁신이 건강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강향상이 다시 경제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부상

○ 글로벌 경제대국들은 이미 **Bio-health**의 가능성을 경제혁신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건강기반 경제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추진 중

* WEF는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Sustainable Health Systems, '13)'을 통해 건강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백악관, 2012.4)	 건강의료 전략 (관계부처합동, 2013.6)	 건강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견 (NDRC, 2013.10)
바이오경제 성장을 위한 미국 연방차원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제시	일본은 총리 주도의 Top governance를 통해 R&D 가속화 및 의료수출 확대 추진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산업 총 규모를 1,400조원 이상으로 확대
첨단 R&D 투자 확대, 사업화 촉진, 규제장벽 완화, 교육 프로그램 개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관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중점 추진	신기술 창출,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 신기술/서비스 기반 정비, MEI를 통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 전략 추진	의료/건강관리서비스 수준 제고, 건강보험 서비스 확대, 건강서비스 관련 기반산업 규모 확대, 건강 서비스산업 발전환경 최적화 등 중점추진

○ 궁극적으로, 건강경제 패러다임 실현을 통해 건강산업을 **新성장 동력화**함과 더불어, 건강과 경제가 상생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

□ 건강경제의 개념

- 건강경제는 '건강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 발전이 다시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패러다임



- 즉,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식·바이오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바이오경제의 개념처럼, 건강이라는 요소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는 개념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진화



지식 경제 (Knowledge Economy)	바이오 경제 (Bio Economy)	건강 경제 (Health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산업에서 지식(knowledge)의 생산, 분배 및 사용이 부(wealth)의 창조 및 고용의 핵심 동인(動因)이 되는 경제(AP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기술에 의한 새로운 발견이 관련 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경제활동(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이라는 요소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발전이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

4

건강경제실현을 위한 주요 R&D 전략(예시)

□ 자원기준 : 기술중심(Best technology) → 가치중심(Best practice)

- 기술중심(best technology)에서 기술과 시스템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혁신을 통한 가치중심(best practice)으로의 지원전략 전환필요
- 새로운 기술개발전략 뿐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둘러싼 혁신시스템 전반을 변화시켜야 함
- 이를 위해, 미충족 건강수요(unmet health needs)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치 중심으로 R&D 지원전략의 방향전환 필요

< 가치중심적 R&D 사례, 적정의료기술(appropriate health technology) >

의료기술 분야에 적정기술 개념을 도입한 적정의료기술은 인간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중에서 사용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격, 안전성, 효과성 측면에서 적합하게 개발된 도구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령화, 기술혁신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절감과 BOP(Bottom of Pyramid) 시장 등을 겨냥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균형적 관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 체계, ICT, 3D프린터 등 기반기술 플랫폼, 사용자 혁신(user innovation)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반여건을 중심으로 미충족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연구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등의 전략적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및 시장의 확산이 개도국→한국→선진국(역혁신, reverse innovation), 특정지역·계층→전국·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전략적 니치 관리를 통한 성과확산체계를 구축할 수 것이다.



<적정의료기술의 개념 및 추진전략 예시>

□ 질병관리 : 치료중심 → 예방 · 건강관리 강화

- 기존의 치료중심의 질병관리 및 R&D 패러다임으로부터 예방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함
- 건강한 사람이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은 그 질병을 잘 관리해서 합병증의 발생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볼 때도 기존의 치료중심의 투자보다 예방 · 관리 중심의 R&D투자를 강화시키는 편이 보다 효율적



< 예방 · 건강관리 중심 R&D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 예시 >

빅데이터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IT-Health 플랫폼 기술, HDSS(Health Data Standards and Systems) 등 ICT와 미래융합기술들은 예방 및 건강관리 측면의 혁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이 건강관련 웨어러블 제품을 앞 다투어 출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측면에서도 건강이라는 영역이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이 발생하기 전 고 위험군에 대한 예방을 통하여 국민 질병부담을 줄이거나,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변화 (behavior change)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예방의학, 행동의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건강 혁신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분야가 아니라, 국가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변모시키는 사회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R&D 모델(재원) : 실용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R&D 모델 도입

-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중개연구 개념을 정립하고,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을 통한 실용화 촉진모델을 고려
 - 기초연구에서 임상연구까지 연계되는 T1 중개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통합된 컨소시엄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시급
 - 의료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연구주체간의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프로세스의 통합 및 다양한 개방형 연구지원 플랫폼 제공을 통해 R&D 생산성 향상을 추구
 - 재원확보 측면에 있어서는 타 산업에 비하여 민간 투자 비중이 낮은 의료분야에서는 PPP전략을 통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효과적
- 또한, 공공·민간보험 펀드 기반으로 R&D·인력·자본·시스템·정책 연계확산을 통한 T2 중개연구 확산전략이 필요
 - 기업(병원)에서 개발된 신 치료법이 실질적인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려면 임상진료현장과 공중보건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적용되어야 함
 - 표준적 치료법과 실제 진료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1차 진료기관들로 구성된 진료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또한 필수적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창출을 위한 새로운 R&D의 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보험관련 재정 및 보험회사 자금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전략체계 : 하향식(top-down) → 하향(top-down) · 상향식(bottom-up) 조화

-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전략체계와 함께 시장(market) 및 현장의 미충족 건강수요(unmet health needs)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전략체계가 조화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하향식 과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
-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및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가치 중심의 투자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개 방식에 있어서 분야(사업)의 특성에 따라 하향식(top-down) 전략체계와 상향식(bottom-up) 전략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략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시스템 : 단절 · 분절적 연구 → 통합 · 연계 연구 강화

- 기존에 단절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던 R&D 체계를 통합 · 연계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
- 연구개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 간, 그리고 정부 · 산 · 학 · 연 · 병원 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기초부터 응용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 · 연계 R&D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
- 통합 · 연계를 통해 전체 시스템 내에서 단계(기관)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는 효율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 가능

2 사업기획

① 보건의료 R&D 신약개발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공모)

□ 기획목적

- 보건의료 R&D 신약개발 지원분야 및 대상사업 신규 발굴
- 신약개발 R&D 성과의 혁신적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보교류 활성화, 성과연계 사업 발굴 및 성과 가속화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현황분석) 국내·외 신약개발 R&D 지원현황 조사·분석 및 수요조사
- (사업발굴) 정부 기 지원 사업과의 차별화된 신약개발 지원사업 신규 발굴
- (성과혁신) 성과중심 신약개발 R&D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수립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보건의료 R&D 신약개발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기업 위주의 단순 연구비 지원형태에서 탈피하고 신약개발 공백영역 최소화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 환경 및 정책수요자 중심의 지원형태로 변화할 필요성 대두 ○ 또한 현재 기초원천기술개발 단계 - 응용/개발 단계 - 사업화 단계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실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약연구개발 혁신적 성과제고 필요성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R&D 신약개발 지원분야 및 대상사업 신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약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영역을 도출, 기 지원중인 신약개발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 국내·외 지원현황 및 부처별 신약개발 지원사업 공백영역 분석, 부처 간 성과 연계방안 도출을 통한 신약개발 고숙화 방안 수립 ○ 신약개발 R&D 성과의 혁신적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보교류 활성화, 성과연계 사업 발굴 및 성과 가속화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신약개발 지원 단절 현상을 극복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신약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후속지원방안 등 모색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분석) 국내·외 신약개발 R&D 지원현황 조사·분석 및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국가별 신약개발 R&D 지원현황 및 지원 프로그램 분석 등 - 글로벌 제약기업별 투자현황 및 연구동향 - 연구개발 주요 참여인력 - 신약개발 현황 종합 분석 지원공백영역 및 연계방안 도출 - 기술 수요 조사 등을 통해 R&D 수요 분석 추진 등 ○ (사업발굴) 정부 기 지원 사업과의 차별화된 신약개발 지원사업 신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지원 공백영역이나 재구성 필요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영역 도출(포지셔닝) - 사업개념 및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원 타당성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수립 등 ○ (성과혁신) 성과중심 신약개발 R&D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개발 R&D 성과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안) 개발 - 부처별(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등) 신약개발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 신약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조사·분석 - 부처간 신약개발 R&D 성과연계 및 후속지원방안 마련(fast track 등) - 부처간 연계사업 발굴(공동 기술수요조사, 공동 세부기획, 공동 국민홍보방안 등)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② 유전자 검사기관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공모)

□ 기획목적

-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인증 제도 도입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 질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유전자 검사기관 및 검사 현황 조사
- 외국의 유전자 검사제도 현황 조사
- 국내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평가 관리체계 방안
-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평가 지표 개발
- 기대효과 분석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유전자 검사기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기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질병위험도 검사의 오남용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이슈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는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장벽으로 맞춤형료 확산 및 연관 산업 발전이 지연된다고 주장 -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은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 남용, 개인정보보호 장치 미흡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 부적절한 유전자 검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신기술 확산과 건전한 산업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인증 제도 도입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 질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항목별 규제방식의 실효성 한계 및 검사기관의 미흡한 질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불필요한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양질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정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과학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추진배경 및 사회·경제적·정책적 필요성 제시 ○ 국내 유전자 검사기관 및 검사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신고현황, 검사실시 현황 조사 - 의료기관/ 비의료기관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관련 검사의뢰·실시 및 검사결과 상담 현황 - 검사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보유현황 ○ 외국의 유전자 검사제도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현황 및 검사기관 규제현황 - 평가 인증 관련 제도 현황 ○ 국내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사업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관, 평가기준, 평가내용, 결과 활용 등 -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 ○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평가 관리체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평가·인증을 위한 관리조직, 법·제도 개선사항, 인력, 관리체계 방식, 소요 예산 등 검사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방안 제시 - 시범사업 수행 방안 제시 ○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평가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인력, 검사항목 및 결과상담 등 검사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지표 제시 ○ 기대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비고	<p>추진방식 공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③ 치료재료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방안 수립(공모)

□ 기획목적

-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의료기기개발 성공을 위하여 개발 공백(Gap)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및 역량강화
-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효율적 연구지원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상업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 전략 도출
- 국내 치료재료 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D 추진체계, 구체적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 및 전주기적 지원 세부 시행계획 마련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국산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치료재료 사업 시장분석, 동향분석 및 사업 추진방향 수립
- 치료재료의 국산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수립
- 사업의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치료재료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방안 수립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지원 차별성) 유관 부처(미래부, 산업부, 복지부)등 부처 고유 미션 및 지원영역을 고려하여 복지부 차원의 전략적 의료기기 개발 추진 요구 ○ (복지부의 중점지원 방향성) 의료기기 개발 프로세스 관점에서 복지부의 중점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투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치료재료 유망 품목 설정 - BT/IT/NT 등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및 무역 역조현상을 제품 중심의 복지부 고유영역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 필요 ○ (국민 체감분야 육성) 중증질환자, 고령자, 신의료기술 증가로 인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 비용이 매년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보험재정 부담이 주는 품목*의 R&D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수입 제품 대체 필요 <p>* 수입 상위 30대 품목 중, ① 원천기술 기 확보, ② 3년 내 제품화 가능, ③ 시장진입 후 의료비 및 보험재정 절감 파급효과가 큰 품목 개발 지원</p>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의료기기개발 성공을 위하여 개발 공백(Gap)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및 역량강화 ○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효율적 연구지원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상업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 전략 도출 ○ 국내 치료재료 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D 추진체계, 구체적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 및 전주기적 지원 세부 시행계획 마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재료 국산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타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정책적 타당성 및 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정책 미션 및 국가 R&D 정책과 부합성 검토, 기존 사업 및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방안 검토,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 검토 - 연구수요 조사 및 적절한 수요검증을 통한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치료재료 사업 시장분석, 동향분석 및 사업 추진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술동향(특허/논문/기술수준 등) 조사를 통해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 의료비 및 건강보험 등 국내 시장특성 분석 -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략 및 체계 수립 ○ 치료재료의 국산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유망품목 발굴 및 기술로드맵 수립 - 세부연구내용에 대한 목표,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 세부과제 기획 -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의 성과지표 설계 및 개발 - 지원규모 및 과제제안요청서(RFP) 도출 ○ 사업의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용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 포함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④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R&D 기획(공모)

□ 기획목적

- 노인성 만성질환의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 전략 도출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외 노인성 만성질환 진단법 및 치료법 관련 연구 동향 조사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에 대한 정의와 연구범위 설정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을 위한 새로운 R&D 사업 지원 전략 수립 및 RFP 도출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을 위한 중점 연구분야 도출 및 지원 전략 도출
- 사업의 평가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R&D 기획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전략 상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요소 발굴 필요성 증가 ○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 목적의 노인성 만성질환의 예후 예측용 마커 발굴의 필요성 증가 ○ 노인성 만성질환의 임상 및 기초 연구의 발전으로 인해 분자 수준의 새로운 치료 전략 수립의 성공 가능성 증가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성 만성질환의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노인성 만성질환의 진단법과 치료법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R&D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의료 비용을 최소화함 - 노인성 만성 질환 치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하여 의료 산업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국내외 노인성 만성질환 진단법 및 치료법 관련 연구 동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의료비용을 초래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정의 - 노인성 만성질환 의료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최신연구동향 조사 - 노인성 만성질환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대한 최신연구동향 조사 - 주요 선진국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추진 전략 조사 - 국내외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전략 개선 프로그램 현황 조사 -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전략 개선의 장애요인 조사·분석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에 대한 정의와 연구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을 위한 중개연구 단계 및 연구 분야 도출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의 의료비용 측정을 위한 목표 및 지표 개발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을 위한 새로운 R&D 사업 지원 전략 수립 및 RFP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만성질환 진단법 및 치료법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 규모 도출 - 치료 전략의 임상적 실용화 전환을 위한 중개 연구 확산용 기반 구축 방안 제시 ○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전략 개선을 위한 중점 연구분야 도출 및 지원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설문 조사 - 연구과제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사업계획, 추진체계, 소요예산 제시 - 연구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 사업의 평가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⑤ 전주기적 치매 극복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공모)

□ 기획목적

- 치매질환 관련 R&D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중점추진 전략 도출
- 치매질환 관련 기 지원중인 사업들과 차별화된 공백분야 및 핵심분야를 발굴하여 분산 투자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마스터플랜 마련 등
- 치매연구 기반 구축 및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치매 진단·치료 연구 경쟁력 확보 등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외 치매질환 진단·치료·예방 등 전주기적 관점의 연구 동향 조사
- 치매극복을 위한 중점 연구 분야 도출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치매질환 R&D 사업 지원 전략 수립 및 RFP 도출
-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 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전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산확대 및 전략적 투자 전략 수립필요 ○ 치매의 다양한 병인으로 인한 전주기적 사업기획 및 지속적 연구 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치매 R&D 인프라 기반 및 국내 관련 정보공유 체계 및 산업화 연계 활성화 등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질환 관련 R&D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중점추진전략 도출 ○ 치매질환 관련 기 지원중인 사업들과 차별화된 공백분야 및 핵심분야를 발굴하여 분산 투자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마스터 플랜 마련 등 ○ 치매연구 기반 구축 및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치매 진단·치료 연구 경쟁력 확보 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국내·외 치매질환 진단·치료·예방 등 전주기적 관점의 연구 동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연구, 기술, 정책 및 시장(산업) 동향 조사 -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치매 관련 연구지원현황 및 추진전략 조사 - 개발 장애요인 조사·분석 - 치매연구 인프라 (연구자, 자원, 기술 등) 현황 및 역량 분석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분석 - 국내 민간기업 투자 현황 조사 - 복지부, 타부처 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공백분야 조사·분석 ○ 치매극복을 위한 중점 연구 분야 도출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병원 등 폭넓은 전문가, 학회·협회 등 의견 수렴 및 설문 조사 - 연구과제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사업계획, 추진체계, 소요예산 제시 - 연구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 치매질환 R&D 사업 지원 전략 수립 및 RFP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진단법 및 치료법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 규모 도출 - 치매 연구 산업화 연계 연구방안 도출 ○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 및 관리 계획 도출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⑥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기획(공모)

□ 기획목적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에 대한 정부 신규지원 타당성 검토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사업의 중점 세부사업 도출과 추진 전략·체계 제시

□ 주요내용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사업 추진 개념 정립 및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 국내외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관련 현황 조사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중점 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 과제 발굴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안 수립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 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과제 선정 후 진흥원에서 기획 자문위원 추천 예정
(통일 정책/의료 전문,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구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기획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건의료분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공백 발생으로 보건의료문제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감염성질환이나 모자보건에 집중* 및 북한에서 요구하는 단발성 사업 지원에 한정** *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 북한의 산모·유아에게 임신부터 2세까지 영양·보건 지원(UN 경유) ** 의료장비 교체, 병원시설보수 등 북한 요구사업을 우선 지원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간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R&D 협력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R&D 지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통일 기반 구축의 교두보 역할 가능 * 통일 이전부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교류가 필요하나 현 남북한 관계로는 어려운 상황 이므로, 남북한 통일 상황을 가정한 보건의료분야 R&D 지원 등 새로운 방향의 신뢰 축적 노력 필요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에 대한 정부 신규지원 타당성 검토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사업의 중점 세부사업 도출과 추진전략·체계 제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사업 추진 개념 정립 및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개념 및 연구 범위 등 정립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특성, 기본 방향 설정 - 사업추진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국내외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관련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현황과 유사한 국외 사례(독일 등) 조사·분석 - 국내 현황 조사·분석(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건강수준 격차 등 현황 분석 및 기존문헌 조사 분석)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중점 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범위 설정 - 통일관련 전문단체(공공기관, 연구기관, NGO 등) 소속 전문가 또는 해당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대상 미충족 수요 발굴 - 종합적인 분석결과(우선순위 설정, 중복성 검토 포함)에 따른 중점 연구분야 및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중점 세부사업별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제시 - 중점 세부사업별 지원전략 및 운영방안 도출(과제 RFP 도출 포함) - 지원 분야의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3. 과제 선정 후 진흥원에서 기획 자문위원 추천 예정 (통일 정책/의료 전문,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구성) 				

3 기타

① 2015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공모)

□ 기획목적

- 보건의료 R&D 기술분류에 따른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범위·국내 역량·파급효과 분석
-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설정
- 선진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 비교분석 및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의 종합분석

□ 주요내용

- 기술수준조사 활동의 개관
- 기술동향조사
-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기술수준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20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포함 필수
-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 제	2015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유형	기타	
기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산업은 대규모,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리스크가 큰 분야로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 활동 중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년 단위로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분류가 적어 보건산업 분야 활용성 미비 ○ 최근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수준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보건산업기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종합적인 기술수준조사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2항(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R&D 기술분류에 따른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범위·국내 역량·파급효과 분석 ○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설정 ○ 선진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 비교분석 및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의 종합분석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준조사 활동의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준조사 수행 목적, 대상 분야의 개념(하위 분류 포함) 정립을 통한 작성범위 명확히 제시 - 기술수준조사의 목적 및 분석대상에 맞는 프로세스 설계를 위해 평가내용, 방법론에 대한 분석 실시 - 기존 기술수준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대상(기술분류체계)·평가항목·정량화 방법(적용 모형)·기술수준 분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사계획 정립 - 기존 조사방법과의 차별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항목 설정 ※ 조사항목은 기술적 중요도, 기술수준, 기술개발 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최대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 기술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준조사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기술분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술의 정의·범위·국내 역량·파급효과 분석 - 관련 문헌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동향 조사 실시 ○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조사 평가모델 구축 ※ 평가모델에 기술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의 높은 기술수준원인, 기술수준 격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설정 -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의 예비설문을 통한 평가모델 점검 ○ 기술수준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조사 실시 - 선진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수준 비교분석 및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의 종합분석 - 향후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제시 				
기간	12개월	소요비용	20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인력) 포함 필수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기획전문분야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일부개정) >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일부개정) >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5. 7. 15.)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제한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본 기획연구는 3책5공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과제별 세부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형(R&D) 과제일 경우 평가 전 사전선별에서 탈락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2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의 작성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A형 계획서(신청용)”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업안내 → 관련서식)
 - 첨부서류 리스트는 전산입력 시 전산입력화면에서 해당 사항 체크
 - * 체크한 첨부서류 리스트와 제출된 서류가 다를 경우, 과제선정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복지부 산하 3대 과제관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된 과제관리시스템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서 서식은 전산입력 후 자동 작성되는 사항과 한글(hwp)로 작성하는 사항(계획, 첨부서류)으로 구성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합본 및 제본 관련 사항은 서식 내 [일반 작성요령] 참고

□ 전산입력 안내

- 연구계획서 작성 이외에 추후 과제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을 병행하여야 함 (<https://www.htdream.kr/>)
-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전산입력과정을 선행하여야 함
-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전산입력 시 입력프로그램 내 “인건비작성기준표”, “연구개발비작성기준” 등 필독 후 입력요망)
- 인명정보, 기관정보, 과제정보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연구자 및 기관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정보를 수정하여야 과제의 신청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짐
- 과제정보 입력 시에는 인명정보시스템과 기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과제정보를 입력 전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함

□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2015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별첨1)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함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의 사업안내-> 관련법령->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참고

※ 간접비 계상기준

- 본 과제는 기획과제 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할 수 있음

□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후 서류제출

- 제출서류

-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요망

- ②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제출기한

전산입력 기한	기획연구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또는 공문제출)
2015. 6. 8. (월)~6. 22. (월) 18:00	2015. 6. 23. (화) 18:00	2015. 6. 23. (화)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선정

□ 전문기관의 사전선별 심사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해당 첨부서류 목록, 기획과제 부합성 등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 과제 결정 (전문기관 사전선별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하나 자료요구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탈락 처리됨)

□ 구두평가

- 1단계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구두 발표 후 평가

□ 평가점수 계산방식

- 평가점수를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점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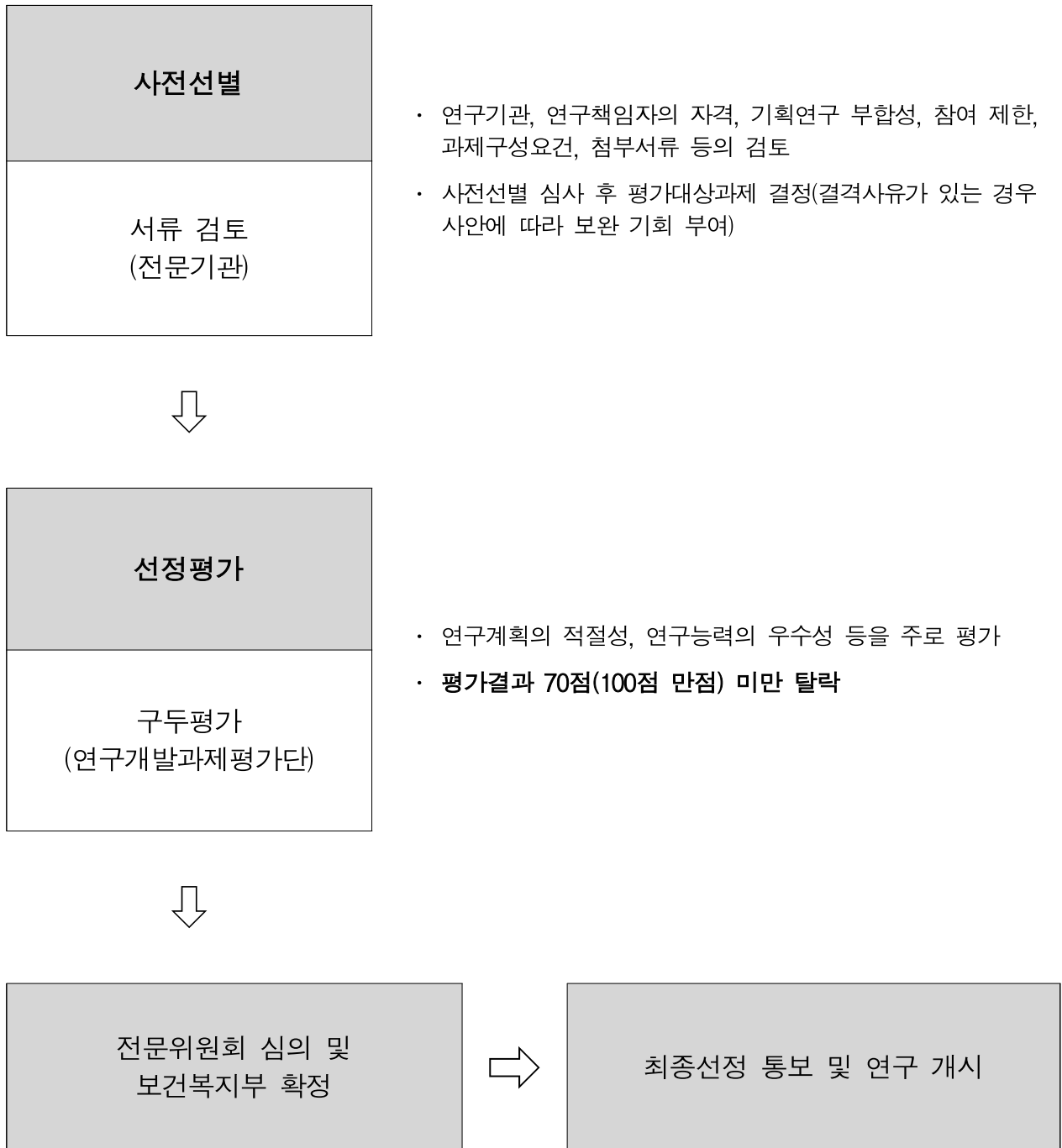
□ 주요 평가기준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능력

□ 기타사항

- 기타 평가에 대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을 준용

2 평가절차



3 연구사업관리

①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세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

② 과제 관리

□ 착수 회의(Kick-off 회의)

-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발표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착수회의에 참가하여 RFP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검토

□ 중간보고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요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 까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진도점검 발표 시행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중간보고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향후 계획 등 검토

□ 최종보고서 검독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 종료 시점에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검독회 개최
 - 검독회에서 건의된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 제출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최종보고서 검독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중간보고서 검독회 시 건의된 수정사항 이행도 등 검토

*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의 양식은 별지 기획과제 최종보고서 서식에 따름

□ 최종보고서 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10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전문기관은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기타 준수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접수 장소 및 문의처

○ 접수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2층 R&D조사분석팀 (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889/8728 FAX : 043-713-8911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 참조

○ 문의처

분야별 기획 담당자 : **【별첨 3】 분야별 기획 담당자 안내 참조(p55)**

☞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의료 R&D포탈 고객센터(질의응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2015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공통)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사용용도】</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인건비 정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내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td> </tr> <tr> <td>외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td> </tr> </tbody> </table> <p>【계상기준】</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산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봉제 적용기관</th>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 </tr> <tr> <th>연봉제 미적용기관</th>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 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head></table> </td> </tr> <tr> <td>기타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td> </tr> </tbody> </table> <p>※ “해당 과제 참여율”</p> <p>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p>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봉제 적용기관</th>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 </tr> <tr> <th>연봉제 미적용기관</th>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 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head></table>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 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봉제 적용기관</th>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 </tr> <tr> <th>연봉제 미적용기관</th>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 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head></table>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 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 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직접비	① 인건비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p> <p>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p> <p>※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p> <p>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p> <p>※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p>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참고사항】</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 하려는 경우</p> <p>○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p>
-----	----------	--

		<p>○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p> <p>【불인정 사항】</p> <p>○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p>
직접비	<p>② 학생 인건비</p>	<p>《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p> <p>【사용용도】</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계상기준】</p> <p>○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p> <p>○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p> <p>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p> <p>【참고사항】</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p>
	<p>③ 연구 장비 . 재료비</p>	<p>【사용용도】</p> <p>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p> <p>2.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p> <p>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계상 가능하며, 자체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에 등에 반영</p>
	<p>③</p>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시점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 심사평가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시 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의 심의완료 및 과제종료 2개월전 구입 과 설치 완료) ○ 현물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 장부가의 20퍼센트를 산정. -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이 아님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④ 연구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

직접비	<p>활동비</p>	<p>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p> <p>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회의수당 포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p> <p>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p> <p>※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 대비하여 비임상·임상시험비의 예산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전문기관(진흥원 과제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p> <p>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p>④ 연구 활동비</p>	<p>【계상기준】</p> <p>○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p> <p>※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p> <p>※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p> <p>-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p> <table border="1" data-bbox="459 1355 1417 1691"> <thead> <tr>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0.5억 미만</td> <td>440천원</td> <td>5억 이상 10억 미만</td> <td>944천원</td> </tr> <tr> <td>0.5억 이상 1억 미만</td> <td>484천원</td> <td>10억 이상 20억 미만</td> <td>1,185천원</td> </tr> <tr> <td>1억 이상 2억 미만</td> <td>545천원</td> <td>20억 이상 30억 미만</td> <td>1,304천원</td> </tr> <tr> <td>2억 이상 3억 미만</td> <td>654천원</td> <td>30억 이상 50억 미만</td> <td>1,435천원</td> </tr> <tr> <td>3억 이상 5억 미만</td> <td>800천원</td> <td>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td> <td></td> </tr> </tbody> </table> <p>※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p> <p>※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p> <p>※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p> <p>-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p> <p>-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p> <p>※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p> <p>○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p>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직접비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4. 연구과제 수행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직접비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p>⑦ 위탁연구 개발비</p>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p>※ 위탁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의 변경시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p>
<p>간접비</p>	<p>⑧ 간접비</p>	<p>【사용용도】</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간접비	<p style="text-align: center;">8 간접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계상기준】</p> <p>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p>
-----	--

		<p>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p> <p>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p> <p>【참고사항】</p> <p>○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불인정 사항】</p> <p>○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불인정</p>
--	--	---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 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우 시 제외)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등), 세미나 개최비 ○ 외부시험 분석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기술도입비 ○ 내부 시험분석료, ○ 기술정보수집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협약체결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기획유형	과제명	담당자	연락처
정책기획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가능한 보건의료 R&D 사업기획	건강경제R&D기획팀 장미	043-713-8236 (rosemb@khidi.or.kr)
정책기획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경제 R&D 추진전략수립 기획연구	건강경제R&D기획팀 홍석철	043-713-8228 (schong@khidi.or.kr)
사업기획	보건의료 R&D 신약개발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신약개발지원팀 손인섭	043-713-8751 (swatsis@khidi.or.kr)
사업기획	유전자 검사기관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유전체TF팀 오세형	043-713-8114 (sho0326@khidi.or.kr)
사업기획	치료재료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 수립	의료기기정보지원팀 성선진	043-713-8443 (shouter0@khidi.or.kr)
사업기획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R&D 기획	특성화연구지원팀 이미희	043-713-8934 (mhlee@khidi.or.kr)
사업기획	전주기적 치매 극복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	중개연구지원팀 우선미	043-713-8227 (wsm1959@khidi.or.kr)
사업기획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기획	R&D조사분석팀 박수정	043-713-8219 (psj8312@khidi.or.kr)
기 타	2015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R&D조사분석팀 정안나	043-713-8571 (anna0411@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배영신 (RnD성과분석정보팀)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RnD성과분석정보팀)	043-713-8297 (bulpae@khidi.or.kr)